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정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금융회사 및 금융 유관기관”을 “금융회사, 금융 유관기관 및 금융이용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금융회사 및 금융 유관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을 “금융회사, 금융 유관기관 및 금융이용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금융이용자’란 금융회사 외의 자로서 법령등에 따른 제재 등 조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또는 금융과 관련된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령해석을”을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령해석 요청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또는 비조치의견서 요청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개별적 행위
3.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의 대상이 되는 법령등의 조문, 관련 법령등의 조문, 그 밖에 관련 공문등의 내용

5. 신청인의 의견 또는 신청인 소속으로 준법감시인이나 법무지원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이나 법무지원부서의 의견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금융 유관기관 중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회사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업자단체는 그 회원을 대신하여서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공동신청) ①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그 대표자로 하여금 요청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가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정된 대표자는 공동신청인을 위하여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절차와 관련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요청을 철회하려면 공동신청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금융당국의 대표자에 대한 통지는 공동신청인 모두에게 효력이 있다.

⑤ 대표자가 변경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동신청인이, 공동신청인의 범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당국에 알려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3항 중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조건부 답변)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에 신청인의 요청내용만으로는 제재 등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답변을 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개를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회신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요청서

신청인	개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법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소속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번호			이메일			
질의요지							
법령해석 요청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비조치의견서의 경우 구체적·개별적 행위)							
관련 법령의 조문 또는 공문등							
신청인의 의견 또는 준법감시인이나 법무지원부서의 검토의견							
회신문 비공개를 희망하는 경우		▪ 비공개 희망 사유()					
		▪ 비공개 희망 기간 ()					

<유의사항>

1. 요청서 재작성이나 추가자료 요청이 없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자료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공동신청인의 대표자가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회신문 공개를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회신일로부터 최대 1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작성 시 의문사항은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02-2156-962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서식]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담당자	담당부서		담당자 (직위, 성명)		연락처	
	관련부서 1		담당자 (직위, 성명)		연락처	
	관련부서 2		담당자 (직위, 성명)		연락처	
요청대상 행위						
판단						
판단이유						

※ **비조치의견서의 효력**(「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제1항·제2항 참조)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